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7-95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본 조례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,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17. 9. 7. ~ 9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
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서울특별시
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잔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로
여입한다.